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진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43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5일
발 의 자 : 정진철 의원(1명)
찬 성 자 : 고병국, 김경영, 김달호,
박기재, 송명화, 이준형,
전병주, 채유미 의원(8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민영체계의 시내버스를 개선하여 공공관리와 공공시설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매년 시내버스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으로 수천억 원을 보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정의 및 재정지원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매년 시행방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법제화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를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사. 재정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아.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자. 외부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차.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카. 재정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타. 서비스 개선과 안전운행 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파.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하.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 폐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부칙안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의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과 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준공영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 노선, 운행 계통, 요금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사업자의 운송적자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자는 버스 운행과 노무·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입금”이란 사업자의 요금수입·이자수입·광고수입·보조금(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그 밖의 부대사업수입을 말한다.
4. “수입금 공동관리”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5. “표준운송원가”란 수입금 공동관리에 따라 시내버스 1대당 1일의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6. "자가차고지 등"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가소유의 토지 또는 타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수입금 공동관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을 통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시내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 시내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지 않아야 하며,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감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시내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 채용한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서울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①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표준운송원가 정산에 관한 사항
2. 수입금 관리·배분에 관한 사항
3.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4. 수입금 부족분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5.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유류 등의 공동구매, 광고수익사업 등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업체협의회가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입금 공동관리) 협의회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그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배분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이나 사업자 또는 단체의 용역·검증을 거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법이나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은 그 해에 산정·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장은 “자가차고지 등”을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연간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의 지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해당 차고 면적에 한한다.

제9조(재정의 지원) ① 협의회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수입금 현황과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에의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원에 집행기준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가운데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감사) ① 사업자는 매년 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의 경영상태에 따라 사업자의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조사) ① 시장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 또는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수입금을 빠뜨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정산·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과 방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제15조(성과이윤의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에게 성과이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한 성과이윤의 일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고용된 운수종사자를 비롯한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제3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성과이윤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1년간 성과이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3년간 성과이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6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 ① 시장은 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채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운수종사자의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민·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내버스의 서비스와 안전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운행 증진을 위한 시책) ① 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의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사업자별 교통법규 위반 현황과 교통사고 및 차량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차량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차량 운행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의 기능이나 전동 발판(휠체어 리프트) 등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가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차량의 연료 용기의 상태 점검 등을 통하여 차량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이른바 ‘테이크아웃 컵’)이나 그 밖의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 등을 지닌 여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還收) 또는 감액 처분을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2. 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또는 난폭운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참여나 재정지원금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이 결정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정산을 마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에 따라 사업자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지급 중단이 결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다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